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8. 21 선고 2019가단52554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C

변론 종결 2020. 7. 10.

판결 선고 2020. 8. 2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64,150,686원과 그중 89,956,165원에 대하여는 2019. 11. 2.부터, 77,194,521원에 대하여는 2019. 11. 7.부터 각 2020. 7. 1.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김지영

별지